

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

목 차

수출입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

① 바이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 확대	p.1
② 보세공장 특허 갱신 요건 변경	p.2
③ 주력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반입대상 범위 확대	p.3
④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 대상 범위 확대	p.4
⑤ 보세공장 잉여물품 업무 처리 절차 개선	p.5
⑥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	p.6
⑦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중 先사용 後사용신고 대상 확대	p.7
⑧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차량범위 확대	p.8
⑨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 도입·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	p.9
⑩ 특송업체에 대한 자체시설 행정제재 적용기간 완화	p.10
⑪ 세관지정장치장 이전·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신설	p.11
⑫ 중소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	p.12

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를 통한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

⑬ 적법한 물품검사로 소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 간소화	p.13
⑭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강화	p.14
⑮ 사후관리 종결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범위 확대	p.15
⑯ 외국무역선 상시승선자에 대한 모바일 상시승선증 도입	p.16
⑰ 외국무역선 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	p.17
⑱ 전자식 교환권 오프라인 보세판매장으로 확대	p.18
⑲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	p.19
⑳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	p.20

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제 질서 확립

㉠ 오픈마켓(통신판매중개자)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및 공표	p.21
㉡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	p.22

㉓	목록통관 이고 검사대상을 고위험물품으로 변경	p.23
㉔	특송물품 목록통관 임시개청 규정 신설	p.24
㉕	보세공장 사용신고 취하 및 부과고지 절차 마련	p.25
㉖	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 조정	p.26
㉗	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	p.27
㉘	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	p.28

1 바이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 확대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보세공장 특허대상 보세작업 • 제조·가공 • 수리·조립·분해·검사·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 • <u>< 신 설 ></u>	☐ 보세공장 특허대상 보세작업 <u>범위 확대</u> • < 좌 동 > • < 좌 동 > • <u>원재료의 품질검사</u> *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의 불량여부를 Test 하는 공정 등도 보세작업의 한 종류로 인정하여 보세공장 내에서 원재료의 성능검사 및 선별작업 허용

○ (기대효과)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도 제조공정으로 인정하여 바이오 新산업의 육성 및 지원

○ (시행일) '20. 7. 21.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4조 개정)

2 보세공장 특허 갱신 요건 변경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보세공장 특허 갱신 요건 • 관리요건 - 보세사 채용 - 물품관리체계 확립, 시스템 구비 - 보세화물/작업 감시·감독 용이 - <u>직전년도</u> 법규수행능력평가가 B등급 이상	☐ 보세공장 특허 갱신 요건 <u>변경</u> • 관리요건 - < 좌 동 > - < 좌 동 > - < 좌 동 > - <u>갱신신청 전 특허기간 동안</u> 법규수행능력평가가 평균 B등급 이상

○ (기대효과) 특허갱신 요건 중 ‘법규수행능력 측정결과’는 특허기간 동안 평균 등급으로 측정함으로써 보세공장 운영인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제고

○ (시행일) '20. 7. 21.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5조 개정)

3 주력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반입대상 범위 확대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• 보세공장 원재료 •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 •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- < 신 설 > - < 신 설 >	☐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<u>범위 확대</u> • < 좌 동 > • < 좌 동 > • < 좌 동 > - <u>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, 유지보수, 수리 등을 위해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이 필요한 물품</u> - <u>수리를 위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선박·항공기내에 적재된 유류</u>

○ (기대효과)

- 既수출된 해양플랜트의 마무리공정, A/S 또는 수리를 위해 국외로 수출하는 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1차 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여 주력산업 수출지원
- 수리 목적으로 반입되는 선박·항공기 내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세납부 및 환급절차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

○ (시행일) '20. 7. 21.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2조 개정)

4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 대상 범위 확대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 대상 (요 건) 사용 신고*한 물품 중, • 거대중량(부피) 물품 •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*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그 사용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	☐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 대상 <u>범위 확대</u> (요 건) 사용 신고하거나 <u>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중,</u> • < 좌 동 > • < 좌 동 >

○ (기대효과) 보세화물의 관리·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함으로써 중공업 보세공장의 제조활동 지원

○ (시행일) '20. 7. 21.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의2 개정)

5 보세공장 잉여물품 업무 처리 절차 개선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잉여물품 원형변형 작업 절차 폐기신청 → (폐기승인) → 원형 변형 작업 → 완료 보고	☐ 잉여물품 원형변형 작업 절차 <u>간소화</u> <u>원형변형 작업(자율) → 작업내역 자체 기록관리</u>
☐ 중량측정 목적 일시반출 잉여물품 업무처리 절차 - 허가(정정)신청시 세관직원 심사 수리 통보 <u>< 신 설 ></u>	☐ 중량측정 목적 일시반출 잉여물품 업무처리 절차 <u>개선</u> < 좌 동 > - 전산 자동수리 허용 (자동 수리 요건) 1)<u>잉여물품 즉시반출업체가</u> 2)<u>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을</u> 3)<u>세관에 등록된 장외일시 장치 장소로 반출</u>

○ (기대효과)

- 보세공장내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의 원형변형작업은 별도의 폐기 절차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절차 이행에 따른 기업의 업무부담 감소 및 공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보세공장내 계량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보세공장 밖에서 계량할 수 밖에 없는 성실 중소 보세공장의 신속한 잉여물품 수입통관 지원

○ (시행일) '20. 7. 21.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3조 개정)

6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< 신 설 >	□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• (적용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% 이상 • (특허요건 간소화) 특허요건 중 물품관리체계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 특허 허용 • (특례 신설) <u>세관신고절차를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또는 사후 방식 적용</u> - 다만, 특례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, 품목, 장소 등에 한정하여 특례적용 • (사후관리)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매월(또는 분기) 단위 운영상황 보고

○ (기대효과) 중소 수출기업이 세관의 관리부담을 덜고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완화 및 세관 절차 간소화

○ (시행일) '20. 7. 21.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5조의3 신설)

7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중 先사용 後사용신고 대상 확대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선사용 후 사용신고 대상 • (적용대상) 공휴일, 야간 등 개청시간 이외에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-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- < 신 설 >	☐ 선사용 후 사용신고 대상 확대 • < 좌 동 > - < 좌 동 > - <u>장외작업*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</u> * 해당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

○ (기대효과) 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되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서도 先사용 後사용신고 허용함으로써 보세공장 물류비 절감

○ (시행일) '20. 7. 21.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7조 개정)

8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차량범위 확대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보세운송 차량범위 - 보세운송 등록된 차량만 보세운송 가능 < 추 가 >	☐ 보세운송 차량범위 확대 - 보세운송 등록된 차량만 보세운송 가능(원칙) (적용 대상) - 일시 보세작업 허가를 받은 물품의 경우 원보세공장 또는 다른 보세공장 소유 차량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- 보세공장에서 제조·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 보세공장 소유 차량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(적용 요건)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운송신고자로 세관에 등록

○ (기대효과) 보세운송 차량 섭외에 따른 보세공장의 운송비용 절감 및 물품 상·하차 대기시간 절약 등 적기 생산지원

○ (시행일) '20. 7. 21.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4조 및 38조 개정)

9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 도입 ·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• <u>환급대상이 아닌</u> 물품가격이 200만원(FOB기준)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인 경우에 전자상거래업체가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출신고로 같음 ※ 화주 수출실적 불인정 및 환급 불가	□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플랫폼 도입에 따른 <u>수출 절차 개선</u> • 물품가격이 200만원(FOB기준)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인 경우에 전자상거래업체가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전용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되어 수출신고 됨 ※ 화주 수출실적 인정 및 환급가능

- (기대효과) 배송내역을 수출신고로 자동변환해주는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간편한 관세·부가세 환급이 가능
- (시행일) '20. 9월 중(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조, 제5조, 제35조의2 및 제44조 개정)

10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기간 완화

(특수통관과, 042-481-783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•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7일 이상 30일 이하의</u> 기간을 정하여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1) 최근 1년 이내 경고처분 3회 2) 임원·직원 등이 금품수수 등 3) 자체시설의 보완요구 불이행 4) 관세법 제276조 위반 5)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	□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<u>완화</u> •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1일 이상 30일 이하의</u> 기간을 정하여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< 좌 동 >

- (기대효과)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등에 대한 통관·반입 일시정지 행정제재 기간을 완화하여 업체부담 경감
- (시행일) '20. 8월 중(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0조제1항 개정)

11 세관지정장치장 이전·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신설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< 신 설 >	□ 세관지정장치장 이전·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마련 • 세관지정장치장* 이전·확장 시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이전·확장하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, 이전·확장하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지정 받은 기간으로 한정함 *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

○ (기대효과) 화물관리인 지정절차를 신설하여 새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화물관리인의 화물취급 안정성을 보호

○ (시행일) '20. 6. 11.(「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」 제8조 개정)

12 중소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세관검사장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 •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·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 • < 신 설 >	□ <u>중소기업의</u>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 가능 • < 좌 동 > • 다만, 국가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*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 지원 가능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
□ < 신 설 >	□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<u>일부 위탁</u> 가능 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*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필요경비 지원 가능 * 신청서 접수,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

○ (기대효과)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 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에 기여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173조 및 제329조 개정)

13 적법한 물품검사로 소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 간소화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 손실*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 *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 ●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<u>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물품을 검사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, 세관장은 심사 후 보상금 지급</u>	□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 간소화 ●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<u>해당물품을 검사한 부서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손실보상 금액 등을 조사하여 운영부서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</u>

- (기대효과) 손실보상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
- (시행일) '20. 7. 1.(「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 개정)

14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강화

(세원심사과, 042-481-787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• (통관단계) -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의무사항 기재 날인 - < 신 설 > • (통관이후)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발송	☐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<u>강화</u> • (통관단계) - < 좌 동 > - <u>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자동 생성·출력</u> • (통관이후) < 좌 동 >

○ (기대효과)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의 다양화·구체화를 통해 사후관리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8조 개정)

15 사후관리 종결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범위 확대

(세원심사과, 042-481-787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사후관리 종결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 <u>< 신 설 ></u>	☐ 사후관리 종결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<u>범위 확대</u> • < 좌 동 > • <u>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 감면 물품 중 부분품, 원재료</u>

○ (기대효과) 사후관리 종결절차 간소화 대상범위 확대로 사후관리 부담 완화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1조 개정)

16 외국무역선 상시승선자에 대한 모바일 상시승선증 도입

(국경감시과, 042-481-778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상시승선증 발급 - 외국무역선 상시승선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, 세관장은 심사 후 종이·카드 상시승선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함 < 신 설 >	□ 상시승선증 발급 범위 <u>확대</u> < 좌 동 > - 외국무역선 모바일 상시승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상시승선증 관련서류 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, 세관장은 심사 후 모바일 상시승선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함

○ (기대효과) 모바일 상시승선증 도입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업무효율성 제고

○ (시행일) '20. 하반기(「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」 제39조 개정)

17 외국무역선 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

(국경감시과, 042-481-778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승선신고 의제 대상 - 선용품·선내판매용품·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용품 적재 등 허가(신청)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같음 < 추 가 >	☐ 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 < 좌 동 > - 승무원 가족 또는 업무목적 등으로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출입국·외국인청장에게 승선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같음

○ (기대효과) 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로 민원편의제고 및 업무효율성 제고

○ (시행일) '20. 5. 25.(「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」 제37조 개정)

18 전자식 교환권 오프라인 보세판매장으로 확대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전자식 교환권 이용 범위 온라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음	☐ 전자식 교환권 이용 범위 <u>확대</u> <u>온라인 및 오프라인</u>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음

○ (기대효과) 면세품 인도방식을 종전 종이교환권에서 전자식 교환권으로 변경함에 따라 보세판매장 업무효율화 및 여행자 편의제공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2조, 제14조 개정)

19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< 신 설 >	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•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보세관매장에서 물품 판매 가능

○ (기대효과) 여행객 편의 제고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효과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196조 개정)

20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

(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, 042-481-77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u><신 설></u>	☐ 납세보호관 신설 • (자격) 관세·법률·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• (직무) ① 위법·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② 위법·부당한 처분(납세고지 제외, 이하 같음)에 대한 시정요구 ③ 위법·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④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·절차 개선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·감독 ⑥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⑦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
	☐ 납세자보호위원회(이하 '납보위') 신설 • (설치)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설치 • (구성) 18명 이내의 위원(위원장 1명 포함) • (심의대상) ① 관세조사 범위 확대 ② 관세조사 기간 연장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③ 위법·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납세자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④ 장부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⑤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보위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
	☐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·중지 요청 • 납세자는 관세조사기간 중 세관 납보위 및 관세청 납보위에 심의 요청 가능

○ (기대효과)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118조의2~제118조의5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44조의2~제144조의4 신설)

21 오픈마켓(통신판매중개자)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및 공표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13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< 신 설 >	☐ 오픈마켓에 대한 <u>서면 실태 조사</u> • (주체)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• (조사주기) 매년 1회 • (조사대상) 아래와 같은 수입물품이 판매된 오픈마켓(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) 1)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·승인 위반물품 2)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3) 지식재산권 침해물품
☐ < 신 설 >	☐ 서면 실태조사 공표 •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여 아래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1)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 물품 내역 2) 사이버몰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3) 그 밖에 서면실태 조사 결과

- (기대효과)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억제 및 소비자 피해 예방
-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266조 개정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64조의 2 및 제264조의 3 신설)

22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

(특수통관과, 042-481-783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<u>선택</u> 기재 특송업체가 화주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하는 때, 통관목록 상 ‘수화인 식별부호’를 화주의 <u>개인통관고유부호</u> 또는 <u>생년월일</u> 둘 중에 <u>선택하여</u> 기재	□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<u>필수</u> 기재 < 좌 동 > 통관목록 상 ‘수화인 식별부호’를 화주의 <u>개인통관고유부호를</u> <u>필수</u> 기재 (다만,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기재 가능)

* 목록통관 :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,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이하(미국발 200불 이하)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

○ (기대효과) 개인전자상거래의 경우 생년월일 제출을 제외하고 실명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 하도록 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

○ (시행일) '20. 10월 중(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별표 3 개정)

23 목록통관 이고 검사대상을 고위험물품으로 변경

(특수통관과, 042-481-783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목록통관 물품 중 이고*(移庫)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물류센터(세관지정장치장)로 이고하여 검사 *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옮기는 일 ● 이고 검사대상 -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	☐ < 좌 동 > ● 이고 검사대상 <u>변경</u> - <u>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, 총포류, 모의총포류, 도검류 등 고위험물품</u>

○ (기대효과) 이고 검사대상을 고위험 물품으로 조정하여 통관 관리는 강화하면서 특송업체 부담은 완화

○ (시행일) '20. 8월 중(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)

24 특송물품 목록통관 임시개청 규정 신설

(특수통관과, 042-481-783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< 신 설 >	□ 목록통관 특송물품 임시개청 근거 마련 • 목록통관 임시개청의 세부적인 절차 및 전용 서식 마련

- (기대효과)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임시개청 근거를 신설하여 목록통관의 임시개청 관리 실효성 확보
- (시행일) '20. 8월 중(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 9조의2 신설)

25 보세공장 사용신고 취하 및 부과고지 절차 마련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< 신 설 >	□ 사용신고 취하 절차 마련 • (대 상) <u>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사용신고한 물품으로서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</u> - (절 차) <u>수입신고 취하 절차 준용</u> • <u>사용신고 물품 부과고지 절차 마련</u> - (대 상) <u>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물품</u> - (절 차) <u>부과고지(가산세 포함)</u>

○ (기대효과) 사용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고 취하를 허용함으로써 운영인 스스로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부과고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

○ (시행일) '20. 7. 21.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8조의2 신설)

26 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 조정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2개 운영 • (수산물) 뱀장어, 냉동조기, 향어, 활낙지, 미꾸라지, 냉장명태, 가리비, 돔, 냉동꽂치, 식용 천일염, 냉동꽃게, 염장새우, 냉장갈치, 활우렁쉥이, 냉장홍어, 활떡장어, 활방어 • (농산물) 냉동고추, 건고추, 김치, 팔, 콩(대두), 참깨분, 도라지, 땅콩, 황기, <u>당귀, 지황, 천궁, 사탕무당(설탕), 작약</u> • (공산품) 에이치형강	□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26개 운영 • (수산물) < 좌 동 > • (농산물) 냉동고추, 건고추, 김치, 팔, 콩(대두), 참깨분, 도라지, 땅콩, 황기 • (공산품) < 삭 제 > ※ 수산물은 「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2020.10.1.자로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

○ (기대효과)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
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

○ (시행일) '20. 8. 1.(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별표 1 개정)

27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*를 고시로 운용 *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제도	☐ <u>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</u> • 판매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된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의무 부과 • 국외반출 여부 확인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권한 부여
☐ < 신 설 >	☐ <u>현장인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</u> • 현장인도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현장인도 제한 •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부과

○ (기대효과) 보세판매장에서 현장인도한 내국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근절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196조의2 신설)

'21. 1. 1.(「관세법」 제277조 개정)

28 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4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☐ 주무부처의 요청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만 안전성검사 실시 * 주무부처의 선택에 따른 협업검사	☐ 관세청에서 주무부처에 <u>안전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</u> *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은 세관장과 공동으로 주무부처에 안전성검사 시행 요청 가능 제226조(허가·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)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·승인·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·승인·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, 확인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 ☐ 주요 <u>공항·항만에 협업검사센터 설치 근거 마련</u> * 인천협업검사센터('16.1.~), 부산협업검사센터('20.2.~)

○ (기대효과) 국민안전과 권리보호 확대 및 운영효율성 제고

○ (시행일) '20. 7. 1.(「관세법」 제246조의3 개정)